

特許手續을 위한 微生物의 國際寄託과 부다페스트條約

睦 延 均

(KORSTIC 技術情報 2 部長)

遂行하는 業務, 微生物의 寄託 및 分讓에 관한
手續 등이 規定되어 있다.

1. 부다페스트條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先端技術에 의해 微生物
및 遺傳子의 組換技術 등으로서 環境淨化, 代替
에너지, 化學工業, 醫藥學, 農水産分野 등 모든
産業分野에 있어서 革新的인 技術發展을 도모하
고 있는 이때에 特許手續을 위한 微生物의 國際
寄託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이 1980年 8月 1
9日에 發效, 現在 美國, 프랑스, 英國, 西獨, 日
本, 소련, 헝가리, 불가리아, 스페인, 스위스, 리
히텐슈타인, 필리핀 등 12個國이 加盟하고 있
으며 EPO (European Patent Office)가 宣言
書의 通告를 遂行하고 있다.

이 條約은 一定의 要件을 갖춘 微生物의 寄託
機關을 所定の 節次에 의해 國際寄託當國으로 承
認을 하게되며, 締約國의 出願人이 어느 一國所
의 國際寄託當局에 다 微生物을 寄託하고 EPO나
締約國에 特許出願을 할 경우 寄託當局으로부터
交付되는 寄託番號를 받아 이를 提示하게 되면
締約國中의 어느 나라에서나 그의 有效性을 발
휘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는 從來의 國際間에 微生物의 重複寄託을
排除하고 微生物의 寄託에 따른 手續, 經費 등
의 輕感을 도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條約 및 規則에는 이들 目的을 達
成하게 하기 위해 必要한 國際寄託當局의 要件,
그 地位의 取得 및 終止, 限定, 國際寄託當局이

2. 國際寄託當局

부다페스트條約上 微生物에 關聯한 實質的인
業務를 遂行하는 活動機關은 國際寄託當局으로
서 現在는 다음의 세 機關(그림 1)이 國際寄
託當局의 地位를 取得하고서 그 業務를 遂行하
고 있다.

3. 國際寄託當局의 業務

國際寄託當局의 주된 業務는 微生物의 受託,
保管, 分讓에 관한 事項으로서(그림 2) 業務
概要를 보게 되면 먼저 國際寄託當局은 寄託者
로부터 보내온 微生物과 原寄託申請書를 接受하
고 受領한 微生物에 대해 受託을 拒否할 事由
가 없는 한 寄託申請者에게 受領한 事項을
通告한다.

또한 受託業務中 受託을 拒否할 理由로는

(1)寄託하려는 微生物이 當該當局에서 受託할 수
있는 種類의 微生物이 아닌 경우

(2)寄託하려는 微生物이 當該當局에서 技術的 理
由로 인하여 保管이 不可能할 경우

(3)寄託하려는 微生物의 容器만 보내지고 實際
微生物이 送付되어지지 않은 경우 및 送付된 微
生物이 汚染되어 있을 경우 등이다.

名稱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Agriculture Research Culture Collection (NRRL)	通商産業省工業技術院 微生物工業技術研究所(FRI)
住所	12031 Parklawn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2 U. S. A	1815 North University Street, Peoria, illinois 61604 U. S. A	茨城縣·筑波群 谷田郵町 東一丁目一番三號 日本國
職員數	100	11	7
使用語	英語	英語	日語
受託微生物의 種類	藻類, 細菌(放線菌包含) 박테리오파지 細胞培養 곰팡이(酵母包含) 푸로토조아, 動植物바이러스 플라스마이드를 含有한 細菌 但, NIH實驗指針에서 P ₁ , P ₂ 레벨의 것에 限함	農業上 및 工業上重要한 細菌, 酵母, 곰팡이, 放線菌 NIH實驗指針에서 P ₁ 레벨의 遺伝子 組換微生物 但, 다음의 것은 除外 액티노바실루스屬 등 32屬 및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남 등 19種의 微生物 凍結乾燥되지 않는 곰팡이, 바이러스 性劑, 리케티아性劑, 클라미디아性劑, 파지, 플라스마이드, 混合菌, 美國內 에서 頒布認可를 必要로 하는 사람 및 動植物의 病原菌, 보통 方法에 의해 凍結乾燥되지 않는 微生物	곰팡이 酵母 細菌 및 放線菌 但 다음의 것은 除外 ①건강 혹은 環境에 대해 해를 미치거나 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性質을 가진 微生物 ②組換DNA 實驗指針에 의한 P ₂ , P ₃ , P ₄ 레벨의 遺伝子組換微生物

그림 1. 國際寄託當局의 地位를 取得한 寄託機關

受託을 拒否할 理由가 없는 한 國際寄託當局은 微生物을 受領하고 그다음 原寄託申請書의 記載要件에 대해 檢討한 다음 完備된 段階에서 微生物을 受託하게 된다.

國際寄託當局은 微生物을 受託한 後 바로 國際樣式에 따라 受託証을 交付한다. 이때 受託証에 記載되는 寄託日은 國際寄託當局이 微生物을 實際로 受領한 날이 된다.

그다음 國際寄託當局은 微生物의 生存與否에 관한 試驗을 遂行하고 나서 寄託者에게 國際樣式에 의해 微生物의 「生存에 관한 證明書」를 교부한다.

또한 寄託微生物이 生存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要旨가 寄託者에게 通知되며 이 通知書를 받은 寄託者는 당연히 原寄託申請을 새로이 할 수 있다.

微生物의 生存試驗을 끝낸 후 國際寄託當局은

當該微生物을 적어도 30年間 保管한다. 그리고 保管中에 寄託微生物의 試料에 대한 分讓請求가 있게 되면 國際寄託當局은 이를 所定の 節次에 의해 分讓을 하고 그 要旨를 寄託者에게 通知한다.

保管期間을 통하여 保管中에 있는 微生物이 死滅하는 등으로 當該微生物의 分讓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國際寄託當局은 그 要旨를 寄託者에게 通知하여 寄託者는 當該微生物과 同一의 微生物을 再寄託하여 寄託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4. 原寄託手續

1) 原寄託手續

原寄託手續은 寄託者가 國際寄託當局에 微生物과 所定の 事項을 記載한 原寄託申請書를 提出하게 되면 所定節次에 의해 當該當局으로부터 「受託証」 및 「生存에 관한 證明書」를 交付받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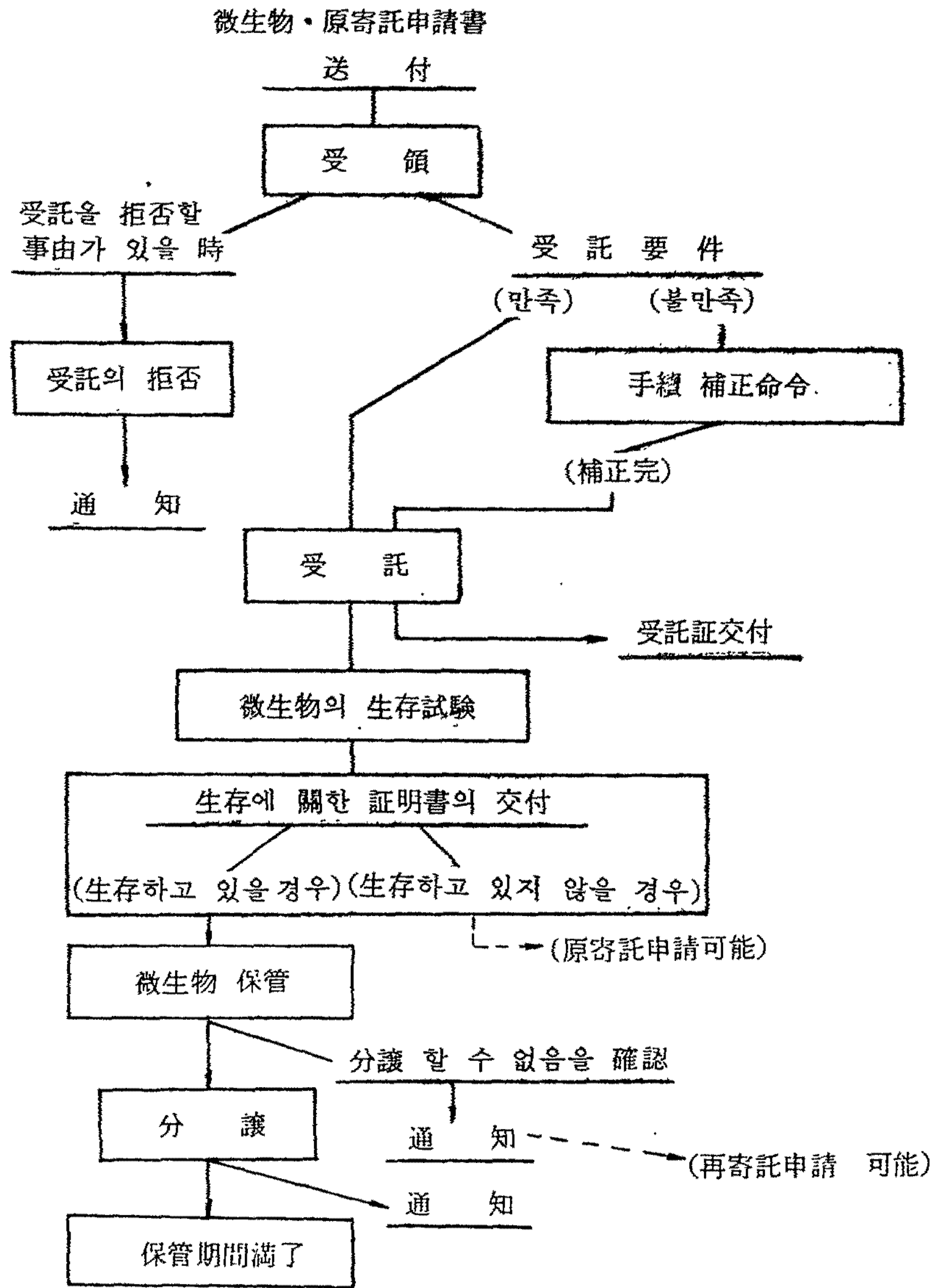


그림 2. 國際寄託當局의 業務

된다.

寄託者는 이 受託証에 記載되어 있는 受託番號를 出願明細書에 記載하여 各國의 工業所有權廳으로 出願하면 된다.

2) 再寄託手續

國際寄託當局에 寄託되어 있는 微生物이 保管中에 死滅하였거나, 輸入制限 등에 의한 理由로 分讓할 수 없을 경우, 그 要旨가 寄託者에게 通知되며, 이 경우 寄託者는 原寄託과 同一의 微生物을 再寄託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當該 再寄託에 대한 通知를 받고나서 3個月 以內에 再寄託을 하게 되면 原寄託한 日字와 同一하게

취급된다.

再寄託手續은 原寄託을 한 微生物과 同一의 微生物을 再寄託申請書와 함께 提出하게 되는데, 이때 再寄託申請書에는 再寄託하는 理由 및 原寄託 微生物과 同一하다는 등의 要旨를 陳述하도록 되어있다.

再寄託微生物을 受託한 當該國際寄託當局은 寄託者에게 새로운 受託番號를 記載한 「受託証」 및 「生存에 관한 證明書」를 交付한다.

寄託者는 새로 交付받은 受託証에 記載되어 있는 受託番號를 各國工業所有權廳으로 通知하고 必要할 경우에는 受託証의 寫本을 提出한다.

3) 移送手續

國際寄託當局이 그 業務를 停止하였을 경우 當該當局을 保證한 締約國은 當該當局이 保管하고 있는 寄託微生物과 이에 관련한 모든 情報를 다른 國際寄託當局으로 移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最大限의 努力을 도모하여 主도록 되어있다.

이때 代行的 國際寄託當局이 業務를 停止한 不履行的 國際寄託當局으로부터 微生物의 移送를 받았을 때에는 當該代行當局은 寄託者에게 새로운 受託番號를 記載한 『受託証』 및 『生存에 관한 證明書』를 交付하게 되는데, 寄託者는 受託証에 記載되어 있는 受託番號를 各國工業所有權廳으로 通知하고 必要에 따라서는 受託証의 寫本을 提出한다.

4) 微生物의 科學的 性質 등에 대하여

寄託者가 原寄託申請을 할 때, 申請書中에는 微生物의 科學的 性質 및 分類學上의 位置를 表示하도록 要請하고 있는데, 이들의 表示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後日에 表示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들의 表示가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는 受託証中에 表記되어지며, 또한 後日에 表示되었거나 修正되었던 것에 대하여는 寄託者의 要請에 의해 그 要旨의 證明書가 交付된다.

微生物의 科學的 性質 및 分類學上 位置의 表示는 國際寄託當局이 當該微生物을 취급함에 있

어서 혹은 寄託된 微生物과 特許出願明細書中에 記載되어 있는 微生物과의 同一性에 關係 論難이 發生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方法의 일환이 될 것이다.

5. 微生物의 分讓手續

國際寄託當局에 寄託되어 있는 微生物의 試料는 關係工業所有權廳, 寄託者 및 寄託者의 承諾을 얻은 者나 法令上 試料의 分讓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 등이 分讓을 받을 수 있다.

1) 關係工業所有權廳에의 分讓

關係工業所有權廳에의 分讓은 締約國 등의 工業所有權廳에게 되면 無條件 分讓을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分讓을 받을 수 있는 一定한 要件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條件에 의한다.

①當該工業所有權廳에 寄託微生物에 관한 出願이 되어, 이 出願의 對象이 當該 微生物 또는 그의 利用에 관한 것일 것

②當該出願이 當該工業所有權廳에 關聯되어 있거나 또는 當該出願에 대하여 特許가 부여되어 있을 것

③當該工業所有權廳에 있어서 當該微生物을 特許手續上 必要로 할 때이며 또한 當該手續에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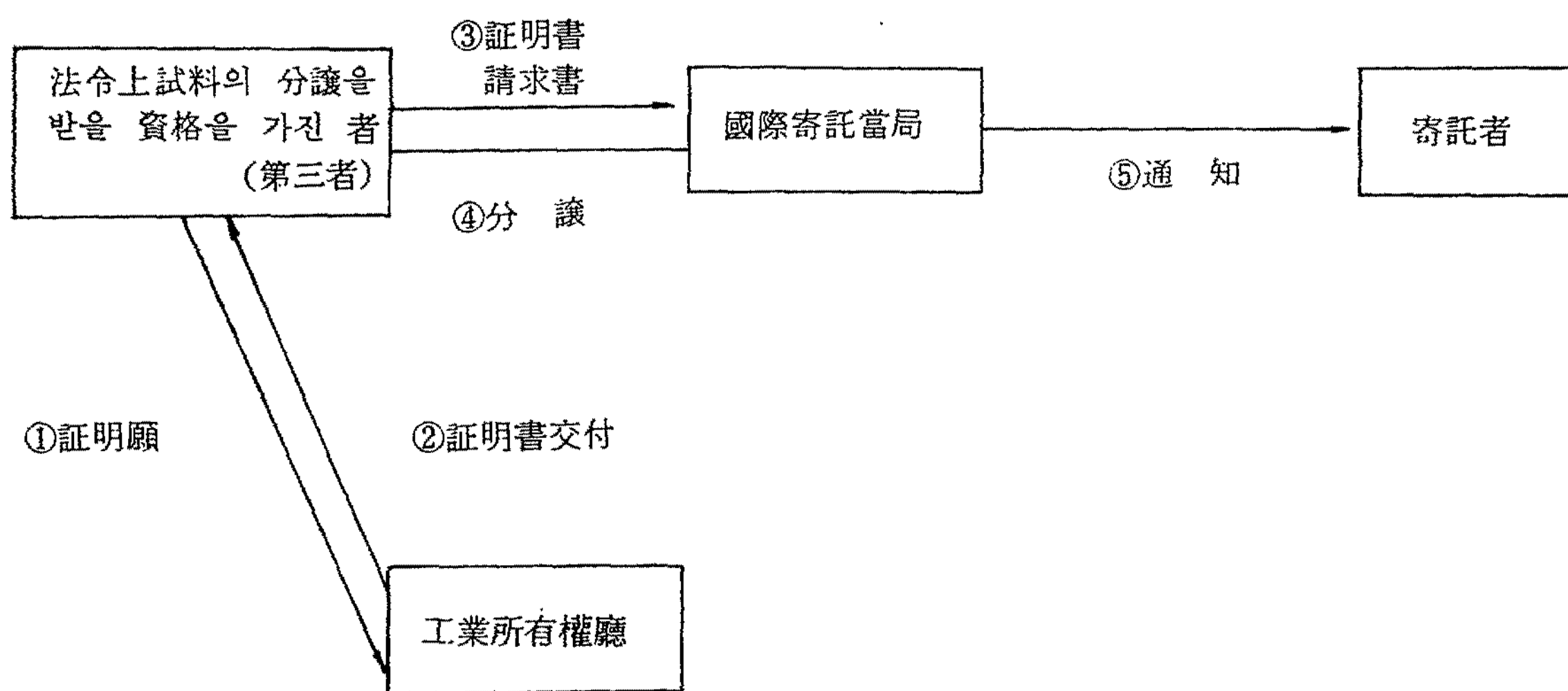


그림 3. 法令上 試料의 分讓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에의 分讓 (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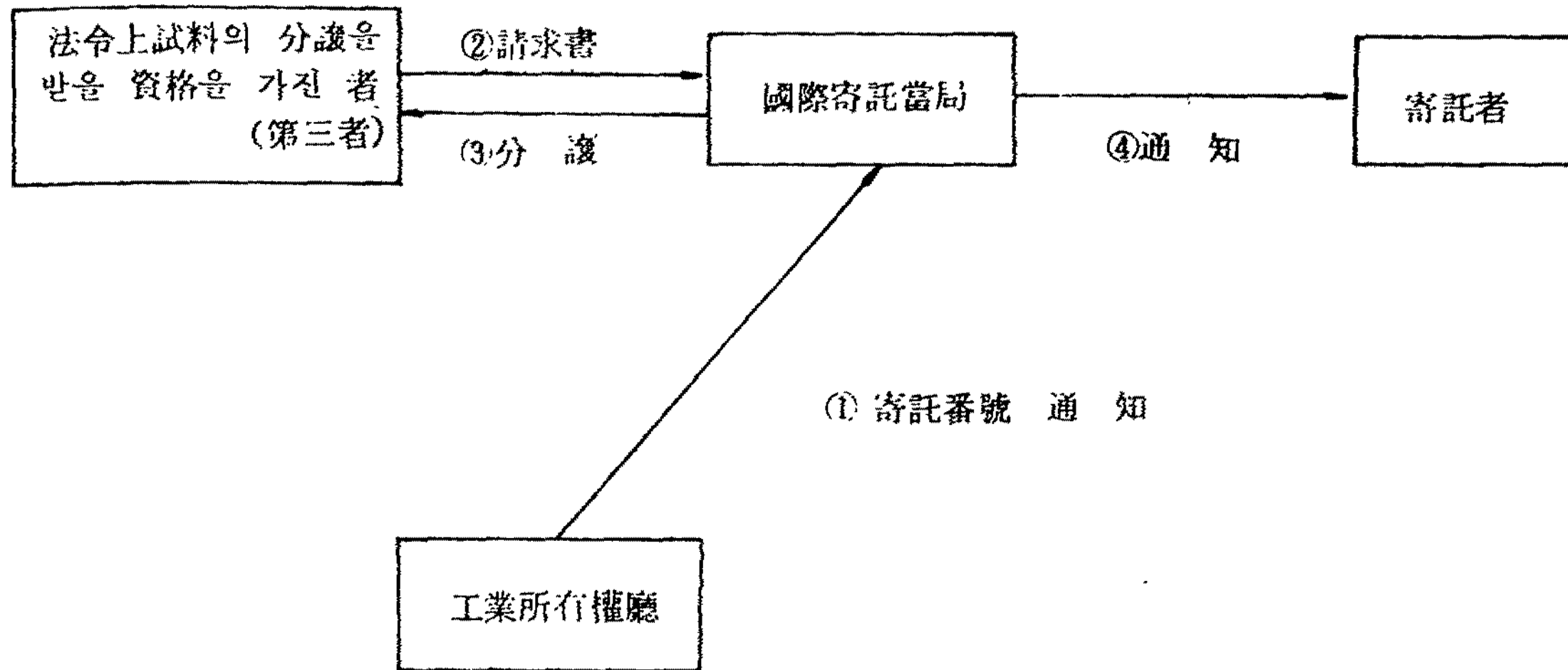


그림 4. 法令上 試料의 分讓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에의 分讓(②의 경우)

使用할 것 등인데 上記 與件의 內容을 陳述한 宣言書를 分讓請求書와 함께 提出하면 된다.

또한 이를 分讓하기에 앞서 當該國際寄託當局은 그 要旨를 寄託者에게 通知한다.

2) 寄託者 및 寄託者의 承諾을 얻은 者에게의 分讓

寄託者는 단순히 分讓請求書를 國際寄託當局에 提出함으로써 微生物試料의 分讓을 받을 수 있으나, 寄託者의 承諾을 얻은 者가 分讓을 받기 위해서는 微生物試料의 分讓을 承諾하는 要旨의 宣言書를 分讓請求書와 함께 國際寄託當局에 提出하면 된다.

3) 法令上 試料의 分讓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에게의 分讓

法令上 試料의 分讓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 소위 第三者가 試料의 分讓을 받으려고 할 때의 手續으로는 制度的으로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① 第三者는 自己가 寄託微生物試料의 分讓을 받을 資格을 가진 要旨의 證明書交付를 當該微生物에 關聯된 特許出願이 되어있는 工業所有權廳으로부터 交付받아 가지고 이 證明書와 함께 分讓

請求書를 國際寄託當局으로 提出하면 된다(그림 3).

② 工業所有權廳이 寄託微生物에 관한 出願을 特許하여 公表하였을 때에 當該微生物의 寄託番號를 國際寄託當局에 通知하고, 當該當局은 그 微生物의 試料를 第三者의 請求에 따라서 分讓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第三者는 ①의 경우와는 달리 證明書의 交付를 工業所有權廳으로부터 받을 必要없이 分讓請求書만을 國際寄託當局에 提出하면 된다(그림 4).

6. 우리나라의 微生物寄託制度

우리나라는 부다베스트條約에 加盟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改正特許法이 1981年 9月 1日 부터 施行됨에 따라 同法 施行令 第1條 2項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實施되는 微生物寄託制度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 特許廳告示 第5號로서 『韓國科學技術院』과 『韓國種菌協會』를 微生物寄託 機關으로 各各 指定하였다.